

#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72조의 요약

-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법인 : 중소기업이면서 결손금 발생 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적법기한내에 제대로 신고하는 법인은 당연도 결손에 대해 직전년(1년내) 법인세액한도로 환급신청가능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의 환급세액 계산액 =  
직전 연도 법인세액(직전년 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액)×직전 연도 세율 ≤ 직전 연도 과세표준×직전 연도 법인세율(감면세액 차감)(=직전 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된 세액을 뺀 금액=직전 연도 법인세액)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즉시 환급세액결정하여 환급해줌.
-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후 과세표준세액이 결정되어 결손금 감소 및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시 해당세금⊕해당세액×하루 0.03%의 이자상당액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 제72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I. 결손금 소급공제와 세액환급

### ① 본 조의 개요

중소기업의 당기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되면 바로 전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당연도 결손금 해당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환급하며, 당연도나 전연도에 납세자의 적법한 자진 신고납세가 있어야 하며, 세무조사로 결손금이 감액되거나 중소기업 외 법인이 환급받은 경우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정한다.

### ② 결손금 소급공제의 이유

기업은 계속 활동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인위적으로 1년 단위로 나누어 법인세신고납부를 한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은 법인사업의 운영에 따라 어느 시점에 발생하기도 하며 특정시점으로 이익이나 손익이 몰리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특정연도에 열심히 활동하여 너무 이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는 후유증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본 법 제13조에서 일반법인은 과거 10년전까지의 결손금에 대해서만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향후의 결손금도 바로 1년전까지의 이익에서 소급하여 상쇄할 수 있도록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세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 결손금 소급공제와 세액환급의 요건과 절차

### ①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세액계산

당연도 발생결손금에 대해 직전 연도 법인세율을 곱하고 여기서 감면세액을 뺀 후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으며 환급세액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세액 : ㉠ ≤ ㉡

= ㉠당연도 결손금액으로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금액(≤ 직전 연도 과세표준) × 직전 연도 법인세율 ≤ ㉡ 직전 연도 과세표준 × 직전년 세율(감면공제액 차감)(= 직전년 법인세액에서 공제 · 감면된 후의 세액)

㉠ = 직전년 법인세산출세액 - (직전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결손액) × 직전 연도 세율임.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②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② 소급공제적용 중소기업의 환급신청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일반적 의미의 중소기업인데, 본 법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즉,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으로 재산규모(500억 이하), 인원규모(300인 이하 등)를 충족한 기업이다. 소급공제환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적법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③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의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③ 환급결정 및 적법신고 요건

환급신청이 적법하면 즉시 환급결정한다. 납세자는 직전 연도와 당연도에 적법한 세무신고를 이행한 경우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④ 소급공제결손금 감소 및 중소기업 외 법인의 환급시 추징과 이자상당액 가산

결손금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세액환급후 당연도 결손금이 감소하면 감소된 결손금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며 관련기간 이자상당액(하루당 0.03%)을 가산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④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times \frac{\text{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text{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추가징수세액} = \frac{\text{소급공제에 의한 당초 환급세액}}{\text{소급공제에 의한 당초 환급세액}} \times \frac{\text{감소된 결손금액으로 소급공제 안된 결손금 초과액}}{\text{소급공제결손금액}} \times (1 + \text{이자율})$$

(이자율 : 1일당 0.03% : 연 10.95%)

⑤ 환급결정부 재결정의 추가환급 및 징수

환급결정하였더라도 직전연도 세액이 달라지거나 당연도 결손금액이 달라지면 재결정하여 추가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소급공제결손금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만큼은 소급공제결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

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적용 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결손금부터만 적용한다.